

동남 하늘채 에디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025.06.13.(금) 공고한 '동남 하늘채 에디크' 입주자모집공고 중(1page) 일부 오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1page

변경 전 (1P)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217이며, 이 공고문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후 (1P)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227이며, 이 공고문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00-4011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
| 공공 | 청주시 거주자 | 충청북도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 10년 | 1년 | 없음 | 적용 | 공공택지 |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5.06.13.(금) | 2025.06.23.(월) | 2025.06.24.(화) | 2025.06.25.(수) | 2025.07.01.(화) | 2025.07.05.(토)~ 2025.07.09.(수) | 2025.08.04.(월)~ 2025.08.07.(목) |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805일원(동남지구 내 A2BL)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50세대(전용면적 59㎡A 476세대, 59㎡B 151세대, 59㎡C 23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청주 동남(A2BL) '동남 하늘채 에디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주관 업체 안내

-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코오롱글로벌(주), 이수건설(주)
- ☐ 시공업체 : 코오롱글로벌(주) / 이수건설(주)

- 「동남 하늘채 에디크」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800-4011)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계대출 총량규제 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60%]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대출이자 후불제 사업이며,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5.06.12.)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13.(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227이며, 이 공고문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는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관람 안내**
 - 건본주택 개관은 2025.06.13.(금) 10:00입니다
 - 건본주택 내 건본세대는 59A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9B·59C타입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본주택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도 홈페이지 참고)
 - * 건본주택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
 - * 건본주택 관람 일정

| 방문 일정 | 주소 | 기 타 |
|--|----------------------------|--|
| '25.06.13.(금) ~ 06.22.(일) (10:00~17:00)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 |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800-4011 |

- 견본주택 관람은 2025.06.13(금) ~ 2025.06.22(일)까지 10일간 운영하며,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제출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홈페이지 포함) 내 실제 건립 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동남 하늘채 에디크(동남지구 A2BL)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상기 '견본주택 관람 일정' 및 당첨자발표일 이후 서류접수기간 등 사업주체가 별도 안내한 기간 및 대상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후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 내 견본세대는 단위세대 59A형이 설치되었으며, 그 외 타입은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내 전시된 단위세대(견본세대, 세대VR, 모형 등)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입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식 오픈 : 2025.06.13.(금) 이후)

※ 홈페이지 정식 오픈일에 타입별 평면도, 세대 VR 등 상품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청약홈)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는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코오롱글로벌의 '하늘채'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 본 아파트의 브랜드명은 「동남 하늘채 에디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명을 말함)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부부 제외))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기관추천 확정대상자(당첨예정자) 등은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우선하며,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신청자격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 | | | | 일반공급 |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순위자) | 추첨공급 |
|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 | 세대구성원 | | | | | | 세대구성원 | | |
| 세대주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신청자 본인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과거 주택소유이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세대구성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입주자저축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불필요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1순위자]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신청자 본인 (가입자) |
| 소득 | 해당 없음 |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30%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40%이하 (맞벌이 200%) |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200%) | | |
| 자산(부동산, 자동차) | 해당 없음 |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 | | | |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 |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일(~로부터) | 기간 | 관련 법령 |
|-------|-----------|--|------------------------------------|
| 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 | 10년 |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 1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말함)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기간 내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재외국민 포함)의 소명서류 제출 불가(해외체류 등 모든 사유 불인정), 적격여부 심사 시 외국인등록번호 조회 불가 등 모두 불인정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세대원(배우자 제외)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5년)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정당 당첨자) | 계약체결 |
|----|--|--|---------------|--|---|---|
| 일정 | '25.06.23.(월) | '25.06.24.(화) | '25.06.25.(수) | '25.07.01.(화) | '25.07.05.(토)~25.07.09.(수) (10:00 ~ 17:00) | '25.08.04.(월)~25.08.07.(목) (10:00 ~ 17:00) |
| 방법 | 인터넷 청약(9:00 ~ 17:30) | | | 개별조회 (청약 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현장방문접수 |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 (10:00~14:00)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 Home" 검색 ■ 청약통장 가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방문 접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당첨 및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또는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일정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청약 시 입력하신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며, 연락처, 주소 오류 기재 또는 변경 시 즉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서면 등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 |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 ○ | | | X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에 따름)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해당제한기간 내에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 격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동남 하늘채 에디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입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 10년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공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I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동남 하늘채 에디크(동남지구 A2BL) : 지하 3층 ~ 지상 최고 24층, 7개동, 공공분양주택 총 650세대 [일반공급 164세대, 특별공급 48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65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 9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2세대, 신생아 특별공급 : 130세대,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32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 65세대 포함)]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 주택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 | | | 발코니 | | 세대별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 | | | | | 최고 층수 | 최하층 배정 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 | | | | | | |
|------------|----|-----------|-------|-------------|---------|-----------|-----------|---------|-----------|-------|---------------|-----------|------|--------|-------|-------|-----|-----|-------|------------|----------|--------|-------|-------|----|----|-----|----|----|--------------------|
| | | | | 공급면적 | | | 그 밖의 공용면적 | | 계약 면적 (계) | 확장 여부 | | 확장 면적 (㎡) | 특별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공급 면적 (계)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 | | 계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생애 최초 | 노부모 | 신생아 | | | | 국가 유공자 | 기관 추천 | 일반 공급 | | | | | | |
| 2025000227 | 01 | 합 계 | | | | | | | | | | | | | | | | | 650 | 65 | 65 | 97 | 32 | 130 | 32 | 65 | 164 | 24 | 30 |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통보) |
| | 02 | 059.9900A | 59A | 59.9900 | 25.5413 | 85.5313 | 9.3565 | 41.5283 | 136.4161 | 확장 | 22.7116 | 48.4407 | 476 | 48 | 48 | 72 | 24 | 96 | 24 | 48 | 116 | 24 | 22 | | | | | | | |
| | 03 | 059.9900B | 59B | 59.9900 | 25.5413 | 85.5313 | 9.3565 | 41.5283 | 136.4161 | 확장 | 18.0489 | 48.4407 | 151 | 15 | 15 | 22 | 7 | 30 | 7 | 15 | 40 | 24 | 7 | | | | | | | |
| | 04 | 059.9900C | 59C | 59.9900 | 25.5413 | 85.5313 | 9.3565 | 41.5283 | 136.4161 | 확장 | 17.2849 | 48.4407 | 23 | 2 | 2 | 3 | 1 | 4 | 1 | 2 | 8 | 23 | 1 | | | | | | | |

-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면적 등을 포함한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합니다.**(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청약신청한 주택형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타입별, 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 등으로 공급가격, 공급안내,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마감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단수 정리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타입)의 최상층입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3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 | | | 시공업체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민간사업자 | | 코오롱글로벌(주) | 이수건설(주) |
| | 코오롱글로벌(주) | 이수건설(주) | | |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및 공급유형별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 주택형 | 약식표기(타입) | 층별 |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 계약시 | 1차(10%) 2025.12.15. | 2차(10%) 2026.04.15. | 3차(10%) 2026.09.15. | 4차(10%) 2027.02.15. | 5차(10%) 2027.06.15. | 6차(10%) 2027.10.15. | 입주시(주택도시기금 제외금액) |
| 059.9900A | 59A | 1층 | 17 | 310,10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27,030,000 | 66,000,000 |
| | | 2층 | 22 | 313,40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28,020,000 | 66,000,000 |
| | | 3층 | 22 | 320,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0,000,000 | 66,000,000 |
| | | 4층 | 22 | 326,60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1,980,000 | 66,000,000 |
| | | 5층 이상 | 393 | 329,90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70,000 | 66,000,000 |
| 059.9900B | 59B | 1층 | 5 | 310,10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27,030,000 | 66,000,000 |
| | | 2층 | 7 | 313,40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28,020,000 | 66,000,000 |
| | | 3층 | 7 | 320,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0,000,000 | 66,000,000 |
| | | 4층 | 7 | 326,60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1,980,000 | 66,000,000 |
| | | 5층 이상 | 125 | 329,90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70,000 | 66,000,000 |
| 059.9900C | 59C | 1층 | 1 | 310,10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31,010,000 | 27,030,000 | 66,000,000 |
| | | 2층 | 1 | 313,40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31,340,000 | 28,020,000 | 66,000,000 |
| | | 3층 | 1 | 320,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2,000,000 | 30,000,000 | 66,000,000 |
| | | 4층 | 1 | 326,60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1,980,000 | 66,000,000 |
| | | 5층 이상 | 19 | 329,90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90,000 | 32,970,000 | 66,000,000 |

■ 공통 유의사항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동-호는 당첨자 선정시 무작위로 배치되며, 분양가는 층별 등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항입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용자금 안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한(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계약 및 전매 시 필요한 인지세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타입)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
- ※ 계약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계약금 | NH농협은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중도금 | | |
| | 잔금 | | |
|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분양대금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금 계좌와 동일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201동 1502호 계약자 홍길동 → '2011502홍길동' / 201동 702호 계약자 홍길동 → '20107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

▣ 발코니 확장비 안내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신청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또한 '마이너스옵션'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타입 (약식표기)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계 | 계약 시 | 2025.12.15. | 입주지정기간 |
| 59A | 7,492,000 | 749,200 | 749,200 | 5,993,600 |
| 59B | 4,571,000 | 457,100 | 457,100 | 3,656,800 |
| 59C | 6,141,000 | 614,100 | 614,100 | 4,912,800 |

- 일부 타입의 경우 계약금(10%), 중도금(10%) 중 일부 금액(천원단위 미만 절사금액)이 잔금에 포함됩니다.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발코니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납부금액 | 납부시기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 계약금 | 공급금액의 10% | 계약 시 |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은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중도금 | 공급금액의 10% | 2025.12.15 | | | |
| 잔금 | 공급금액의 80% | 입주 시 | | | |

-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의 경우 각 세대별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부여할 예정이며, 세대별 가상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반드시 해당 세대의 가상계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별 가상계좌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금 계좌와 동일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가능)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분양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201동 701호 계약자 홍길동 → '2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 하였습니다.(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 발코니 확장 세대는 발코니등 설치 전원박스 및 조명등이 미설치로 감소되고 추후 조명설치가 불가능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침실(1인방)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완강기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식당)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공통

-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벽지 · 바닥재 · 주방용구 ·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를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구 분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문선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 욕실문틀 하부 씬,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내·외부 PL창호, 주방문, 실외기그릴창, 문틀(가틀) |
| ② 바닥 | 강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③ 벽 |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동림, 무선AP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
|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 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레인지후드,일반배수구),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 품목 등은 마감재 리스트 품목에 준합니다.(마감재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 타입 | 59A | 59B | 59C |
|----|------------|------------|------------|
| 금액 | 28,713,000 | 28,713,000 | 28,713,000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타입 | 59A | 59B | 59C |
|----|-----------|-----------|-----------|
| 금액 | 6,076,000 | 3,705,000 | 4,022,000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분양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를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마이너스옵션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 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된 분양 계약 기간에만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 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 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

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사업 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해야하며,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 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 기준에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옵션 금액이 적용된 분양금액(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마감 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 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 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6. 입주금 납부, 중도금대출 관련 유의사항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 선납시점의 선납할인을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향후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사업주체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일)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용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 시에는 계약서 상의 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대출개시일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인해 LTV에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동남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자 선정 시 지역우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6.13)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주시) | 10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주시 거주자 |
| | ② 기타지역(충청북도) | 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분 |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청주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2025.07.01.(화)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 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른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td> <td>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 |
| |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
| |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 | | | | | | | | | | | | | |
| 자동차 | 38,030천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 | | | | | | | | | | | | |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 구분 | 보유기준 | |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①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 ②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부동산(건물+토지) | 237,050천원 이하 | 258,600천원 이하 | 215,500천원 이하 |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
| 자동차 | 41,830천원 이하 | 45,630천원 이하 | 38,030천원 이하 | |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 방문 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원]

| 공급유형 |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 일반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5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 우선공급(1순위자)(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 추첨공급(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다자녀가구 | 우선공급(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노부모부양 | 우선공급(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생애최초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 일반공급(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신혼부부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 배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5,764,250 | 6,862,470 | 7,224,838 | 7,786,469 | 8,348,099 | 8,909,730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 일반공급(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 추첨공급(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 신생아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일반공급(20%)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807,968 | 12,867,132 | 13,546,572 | 14,599,629 | 15,652,686 | 16,705,743 | |
| 배점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5,764,250 | 6,862,470 | 7,224,838 | 7,786,469 | 8,348,099 | 8,909,730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추첨공급(10%)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02,03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

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 구 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 6,484,781 | 7,720,279 | 8,127,943 | 8,759,777 | 9,391,612 | 10,023,446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 7,925,843 | 9,435,897 | 9,934,153 | 10,706,395 | 11,478,636 | 12,250,878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 10,807,968 | 12,867,132 | 13,546,572 | 14,599,629 | 15,652,686 | 16,705,743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 11,528,499 | 13,724,941 | 14,449,677 | 15,572,938 | 16,696,198 | 17,819,459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 12,249,030 | 14,582,750 | 15,352,782 | 16,546,246 | 17,739,711 | 18,933,175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 15,131,155 | 18,013,985 | 18,965,201 | 20,439,481 | 21,913,760 | 23,388,040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 15,851,686 | 18,871,794 | 19,868,306 | 21,412,789 | 22,957,273 | 24,501,756 |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
|-------------------------------|---|
|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구 분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
| 일반공급·다자녀·생애최초·신혼부부· 노부모·신생아 특별공급 |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개인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계약이 불가하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셔야 청약통장 재사용(일정기간 이후)이 가능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회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국민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휴직자 본인의 정상근무기간 소득을 조회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구 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국세청 |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
| 자활근로소득 | |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금))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가 될 수 있는 분

|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 장애인, 국가유공자 | 필요 없음 |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담당기관 : 장애인(충청북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충북 남부 보훈지청 보상과), 10년 이상 복무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중소기업근로자(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괄호()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단위 : 세대)

| 구분 / 주택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예비) | | |
|---------------|--------------------|---------|-------|
| | 59A | 59B | 59C |
| 국가유공자 | 24(120) | 7(35) | 1(5) |
| 장기복무제대군인 | 4(20) | 2(10)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4(20) | 2(10) | - |
| 중소기업근로자 | 19(95) | 5(25) | 1(5) |
| 장애인 | 21(105) | 6(30) | 1(5) |
| 충청북도 | | | |
| 총 세대수 | 72(360) | 22(110) | 3(15) |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5.06.23)에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다자녀가구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충청북도) 거주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비 고 |
|-------------|------|-------|----|--|
| | | 기 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 (1) | 40 | 4명 이상 | 40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3명 | 35 | |
| | | 2명 | 25 | |
| 영유아 자녀수 (2) | 15 |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 | 2명 | 10 | |

| | | | | |
|----------------------------------|----|----------------|----|---|
| | | 1명 | 5 | |
| | | 0명 | 0 | |
| 세대구성 (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해당없음 | 0 | |
| 무주택 기간 (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 | 해당없음 | 0 | |
| 해당 시·도 (충청북도) 거주 기간 (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 | 미거주 | 0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
| | | 해당없음 | 0 | |

(1), (2)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충청북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단위: 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9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노부모부양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어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
|---|--|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혼인 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로 한정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생애최초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생애최초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신청자의 태아 포함))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가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신혼부부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신혼부부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9,366,906 | 11,151,514 | 11,740,362 | 12,653,012 | 13,565,661 | 14,478,311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 제외)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으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 ※ (출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로 확인합니다.
-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 | 가점기준 | | 비고 |
|---------------------------|--|----|---|
| | 기준 | 점수 | |
| 가.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
| | 해당없음 | 0 | |
| 나. 자녀의 수 | 3명 이상 | 3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
| | 2명 | 2 | |
| | 1명 | 1 | |
| | 0명 | 0 | |
|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해당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 | 1년 미만 | 1 | |
| | 해당없음 | 0 | |
|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산정) |
|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 마. 혼인기간(신혼부부에 한함) | 3년 이하 | 3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
| | 3년 초과 5년 이하 | 2 | |
| | 5년 초과 7년 이하 | 1 | |
| | 7년 초과 | 0 | |
| 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에 한함) | 2세 이하(만 3세 미만) | 3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으로 봄)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 |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 2 | |

| | | | |
|--|----------------------|---|--------------------|
| |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 1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 | 해당없음 | 0 | |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5,764,250 | 6,862,470 | 7,224,838 | 7,786,469 | 8,348,099 | 8,909,730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6.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빙서류는 공적 서류 및 금융기관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생아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646,374 | 10,293,706 | 10,837,258 | 11,679,703 | 12,522,149 | 13,364,594 |
| 신생아 일반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807,968 | 12,867,132 | 13,546,572 | 14,599,629 | 15,652,686 | 16,705,743 |
| 신생아 추첨공급 (1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 → 그 외 지역 거주자(충청북도)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 배점기준 | | | 비 고 |
|---------------------------|--|---|---|
| 기준 | 점수 | | |
| 가.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
| | 해당없음 | 0 | |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 3명 이상 | 3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
| | 2명 | 2 | |
| | 1명 | 1 | |
|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해당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 | 1년 미만 | 1 | |
| | 해당없음 | 0 | |
|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
|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 5,764,250 | 6,862,470 | 7,224,838 | 7,786,469 | 8,348,099 | 8,909,730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신청자 본인이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7.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청주시 및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단위 : 원]

| 일반공급 소득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신생아 우선공급 (5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우선공급 (1순위자)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87,437 | 12,009,323 | 12,643,467 | 13,626,320 | 14,609,174 | 15,592,027 |
| 추첨공급 (2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7,205,312 | 8,578,088 | 9,031,048 | 9,733,086 | 10,435,124 | 11,137,162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410,624 | 17,156,176 | 18,062,096 | 19,466,172 | 20,870,248 | 22,274,324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만 해당. 이하 본 문장에서 같음.)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분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1순위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
| 1순위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해 당 사 항 |
|--|
| <p>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표.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p> <p>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p> <p>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p> <p>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p> <p>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p> <p>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p> <p>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p> <p>※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p> |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 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주택건설지역(청주시), 기타지역(충청북도)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중요]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IV 신청 시 확인 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
|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대상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 |
| 3. 주택소유확인 | |
|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대상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대상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출산특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제한 주택우선매입 안내

■ 전매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5.07.01.)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단,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의 경우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제출 등),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는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점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
|------|--|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참조)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기관추천 확정대상자(당첨 예정자) 등은 불가)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본인 기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본 아파트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등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 본인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를 통해 별도 통보 예정이며, 개별 안내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지위 유지기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천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천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유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6.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7.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장기복무 재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25.06.23.(월) (09:00 ~ 17:30) ※ 방문신청 시 (10:00 ~ 14: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가능) |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
| 일반공급 | · 1순위 | '25.06.24(화) (09:00 ~ 17:30) | 인터넷 신청 |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 |
| | · 2순위 | '25.06.25(수) (09:00 ~ 17:30) | | |

2. 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신한은행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서 청약대행접수는 불가하며,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청약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견본주택(☎ 1800-4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

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 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 신청방법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 | |
|---|---|---|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
| 당첨자발표 서비스 | 청약홈 |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01.(화) ~ 2025.07.10.(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 | 문자 | - 제공일시 : 2025.07.0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 | |
|--|--|--|
| | | <p>*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p>-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

2.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로부터 청주시에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청주시)", 충청북도에 거주한 경우 "기타(충청북도)"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구 분 | 조회방법 |
|-------------|---|
| 인터넷 사용 가능 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 인터넷 사용 불가 시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 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추후 홈페이지 별도 안내)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자격서류 제출(정당 당첨자) | 공급계약 체결(정당 당첨자)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
|---|---|---|--|
| 2025.07.01.(화)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 (www.applyhome.co.kr) | 2025.07.05.(토)~07.09.(수) / 5일간 (10:00~17:00) | 2025.08.04(월)~08.07(목) / 4일간 (10:00~17:00) | 추후 일정 당사 홈페이지 고지 (https://dongnam-hanulche.com/) |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동남 하늘채 에디크 건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 | | | |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문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및 계약일 등 예비입주자 일정은 추후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상기 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이 상이하므로 추후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의 경우 해당 기간 별도 안내)는 상기 해당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호추첨 일정에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자적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하여야 하므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기간 상이)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소명기간 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득·자산 등 자격 조회 불가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서류 | ○ | | 서약서 | 본인 | • 접수장소에 비치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본인 | • 접수장소에 비치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원 | ※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신분증 | 본인 |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 배우자 및 세대원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배우자 및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세대구성원 전부) • 당첨자의 (예비)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 ○ | ○ |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 본인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서 신청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접수장소에 비치) |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2세 미만 자녀,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통장사본 | | |
| | | ○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 |
| | |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 | ○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 | |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 |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공고일 이후 등분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정당계약 체결 전 '서류접수기간' 내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를 표시하여 발급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장소에 비치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장소에 비치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 하늘채 에디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여 서류접수기간 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분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분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출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또는 출산특례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
| | ○ | |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 (예비)배우자 또는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서 신청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구분 | 서류 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2세 미만 자녀,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출산특례 관련] '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 | | ○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특례 관련] 출산특례를 적용받아 해당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한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
| | |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예비)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 | ○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 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또는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경우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분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전부),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8.1.1. 전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주민등록표등본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 해당여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관계 불인정)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 | | ○ | 장애인 등록증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 |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제출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예비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주체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 본인 및 예비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장소에 비치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예비)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 구분 | 서류 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 | | 또는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인정 불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기본증명서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자로서 자녀를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른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9> 참고)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직계존속(당첨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
| | | ○ | 자녀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
| | |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 | |
| 신생아 특별공급 | ○ |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 | ○ | | 통장사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로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 | | ○ |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로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 | | ○ | 임신진단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또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 | |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
| | | ○ | 출생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 | |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세 미만 자녀가 입양아인 경우 |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자녀를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 | |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
| | ○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초본 대리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과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표기 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 세대주 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비사항 외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① 해당직장/세무서 |

| | | | |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② 건강보험공단 ③ 홈택스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포함)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②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증명 발급 시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연도에 해당하는 서류 발급 (소득금액증명 5개년도 발급연도와 일치해야 함)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본으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 필수 | 추가 (해당자)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 | |
| ○ | | ①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등),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 ○ | |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상기 단신부임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구 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자격검증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 ○ |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통장 입금증 또는 입금 확인증(현금수납 불가) |
| |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
| | ○ | | 인감도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 ○ | | 신분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 ○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인지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재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우편물 취급소 불가),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 시 사본 첨부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 | ○ | |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 | ○ | | 대리인 신분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 ※ 상기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은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제출한 당첨자(예비입주자)만 제출 가능합니다.
-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 된 실제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선택품목(유 · 무상옵션)

■ 추가선택품목(무상옵션)

| 구분 | 설치위치 | 기본형 | 무상선택 | 비고 |
|----------|-----------|-------------|---------|---|
| 침실1 드레스룸 | 침실1(안방) | 파우더장+드레스룸 | 대형 드레스룸 | ※ 무상선택시 욕실2 도어 위치(방향) 변경 ※ 59B타입 선택 불가 |
| 욕실 비데 | 욕실1(공용욕실) | 비데제공(탈부착가능) | 비데일체형 | |
| | 욕실2(부부욕실) | 비데제공(탈부착가능) | 비데일체형 | |

※ 무상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무상선택품목 미선택시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무상옵션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무상옵션)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무상옵션) 중 침실1 드레스룸 관련 유의 사항

- 선택옵션에 따라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B 타입은 평면의 형태로 인하여 침실1 드레스룸 옵션선택이 불가합니다.
- 기본형은 파우더장+드레스룸으로 시공됩니다. 기본형의 파우더장은 상단 거울, 하단 수납장 등이 반영된 파우더가구가 설치됩니다.
- 옵션 선택 시 욕실2 도어의 위치 및 방향 변경되며, 일부 마감 조명-배선기구-소방설치-환기디퓨저, 스위치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제품의 포스트, 선반, 서랍, 거울, 악세서리 등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옵션에 적용되는 선반의 최대하중은 15kg(선반 1개당)이며, 시스템 선반의 특성상 한곳에 기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한쪽면에만 집중적으로 무게를 가할 시 위험하오니 기준 하중을 지켜 수납하시길 바라며, 개인의 사용미숙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강한 충격을 가할 시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선반-서랍 위에 사람이 올라가거나 기대면 위험하오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이로 인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해당옵션의 선반 및 서랍은 소비자가 직접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조작 시 포스트 피어싱에 정확하게 결합하여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용미숙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무상옵션) 중 욕실 비데 관련 유의 사항

- 기본형은 일반양변기와 비데가 제공되며, 무상선택으로 비데일체형양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데와 무상선택 비데일체형양변기의 비데기능 및 사양이 다르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비데일체형양변기는 욕실1(공용욕실)과 욕실2(부부욕실) 각각 선택가능 합니다.
- 기본형 비데는 분리가 가능하며, 옵션형 비데일체형양변기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 기본형 비데설치 시 양변기 시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 제조사/모델명 | 59A | 59B | 59C | |
|--|-----------------------------------|----------------------------|--|-----------|-----------|-----------|
| 시스템 에어컨 | 선택A | 2개소 (거실 침실)_일반형 | LG전자 α 삼성전자 택 | 3,700,000 | 3,700,000 | 3,700,000 |
| | 선택B | 4개소 (거실,침실,2,3)_일반형 | LG전자 α 삼성전자 택 | 6,700,000 | 6,700,000 | 6,700,000 |
| | 선택C | 2개소 (거실침실)_프리미엄형 UV 포함 | LG전자 α 삼성전자 택 | 4,700,000 | 4,700,000 | 4,700,000 |
| | 선택D | 4개소 (거실침실,2,3)_프리미엄형 UV 포함 | LG전자 α 삼성전자 택 | 8,600,000 | 8,600,000 | 8,600,000 |
| 전기쿠폰 | 선택A |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 1구 (블랙) | 삼성 : NZ63T5601AK | 580,000 | 580,000 | 580,000 |
| | 선택B | 인덕션2구 + 플렉스존 (블랙) | 삼성 : NZ63B5056AK | 930,000 | 930,000 | 930,000 |
| | 선택C | 인덕션 3구 (블랙) | LG : BE3ASB4BI | 1,100,000 | 1,100,000 | 1,100,000 |
| | 선택D | 인덕션 3구 (화이트) | LG : BE3ANHLBI | 1,200,000 | 1,200,000 | 1,200,000 |
| 전기오븐 | 선택A | | 삼성 : NQ36A6555CK | 400,000 | 400,000 | 400,000 |
| | 선택B | | LG : MZ385EBTA | 470,000 | 470,000 | 470,000 |
| 빌트인 냉장고+감자냉장고 ※ 59B 타입 :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시 선택 가능 | 비스포크 패카지 (에센셜베이지 패널) | | 삼성전자 RM70F64R1G 냉장고 4도어+ RCB3DB74E1AP_감자냉장고3도어 | 5,700,000 | 5,700,000 | |
| | 비스포크 패카지 (에센셜베이지 패널) + 선반키르장 | | | | | 6,100,000 |
| | 오브제 패카지 (글라스재질 마스트베이지 패널) | | LG전자 BC4S1AA1(G) 냉장고 4도어+ BC3K1AA1(G)_감자냉장고3도어 | 6,200,000 | 6,200,000 | |
| | 오브제 패카지 (글라스재질 마스트베이지 패널) + 선반키르장 | | | | | 6,600,000 |
| 욕실 스마트 환기팬 | 2개소 (욕실,2) | 함펠 FHD3-C150P | 1,130,000 | 1,130,000 | 1,130,000 | |
|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 | | - | 2,500,000 | 2,700,000 | 2,200,000 |
| 거실 아트월 연장 ※59B타입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시 선택 가능 | | | - | 300,000 | 700,000 | 1,000,000 |
|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도어(수동) | -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 블랙야장 | 침실B 블랙야장 | - | 1,450,000 | 1,450,000 | 1,450,000 |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납부금액 | 납부시기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
| 계약금 | 공급금액의 10% | 계약 시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 | |
|-----|-----------|------|--|
| 중도금 | 공급금액의 10% | 추후공지 | |
| 잔금 | 공급금액의 80% | 입주 시 | |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201동 1502호 계약자 홍길동 → '2011502홍길동' / '201동 702호 계약자 홍길동' → '20107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계약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착오입금)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옵션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해당 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에서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시스템에어컨 및 가전옵션의 경우 옵션계약 체결 시 안내된 제품으로 시공되며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해당 제품명은 옵션계약 당시 배포한 가전사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건본주택 내에는 유상옵션 선택품목을 보여드리기 위해 타입별로 상이한 브랜드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선택하는 브랜드 제품에 따라 설치방법 및 설치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 제시된 제품은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 ※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은 검사기준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선택한 제품은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됩니다.
- ※ 빌트인 가전 및 불박이가구 선택 시 설치부위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가감처리된 금액입니다.
- ※ 주방 가전 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좌우대칭형 세대의 경우 옵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 사항 (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타입별 본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되며 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과 상이하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운영상 사유로 냉난방 공용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각 호수 별로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간 조건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천장 단열재가 반영되어 실내기의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변경으로 거실 우물천장의 모양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관련 동/호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시 에어컨 루버와 입주자가 설치하는 실외기간의 높이 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외기 받침대의 설치는 입주자 공사분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및 전용 콘센트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선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분양계약시 안내된 제품으로 시공되며 입주시점이 아닌 공사 일정에 맞춰 생산된 제품이 설치됨. 해당 제품명은 옵션계약 당시 배포한 가전사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전기쿡탑[인덕션 및 하이브리드쿡탑] 관련 유의 사항

- 유상옵션 전기쿡탑 설치 시에는 기본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등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전기쿡탑 제조사 및 제품 선택에 따라 디자인(색상)이 다르오니 옵션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전기쿡탑 선택 시 상판 타공 치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전기쿡탑 선택 시 추후 가스쿡탑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타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전기쿡탑 선택 시 제조사 및 제품 선택에 따라 디자인(색상)이 다르오니 옵션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전기오븐 관련 유의 사항

-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오븐 미선택시 동일한 크기의 수납가구가 제공됩니다.
- 전기오븐 미선택시 세대분전반에 전용회로의 차단기 및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고 추후 입주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전기오븐 유상옵션 선택 시 전기오븐 하단에 약 13cm 높이의 수납공간이 설치됩니다. 수납공간 보다 큰 물건을 보관할 경우 사람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 관련 유의 사항
 -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A, 59B 타입 유상옵션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설치공간+선반키 큰장,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되며 별도의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59C 타입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공간의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비스포크 패키지 선택시 에센셜베이지 패널마감, 오브제 패키지 선택시 미스트베이지 패널마감으로 시공되며 계약자가 패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59A, 59B타입 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 선택시 4도어 냉장·냉동고, 3도어 김치냉장고 구성되며 가전, 가구의 배치 순서 및 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9A, 59B타입 유상옵션 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 선택시 기본제공되는 선반키 큰장은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59B타입은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유상옵션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옵션적용을 위해 주방레이아웃이 변경되며 이에 따라 가전, 가구의 배치 순서 및 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9C타입 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 선택시 4도어 냉장·냉동고, 3도어 김치냉장고, 선반키 큰장으로 구성되며 옵션적용을 위해 주방레이아웃이 변경되며, 이에 따라 가전, 가구의 배치 순서 및 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 선택시 제조사에 따라 패널색상 및 표면마감이 상이하며, 패널색상은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동일한 색상으로 설치되며 별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스포크 패키지, 오브제 패키지 선택 시 설치되는 키 큰장(59C타입만 적용)의 내부 형태 및 구성, 사양, 손잡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욕실 스마트 환기팬 관련 유의 사항
 - 욕실 스마트 환기팬 옵션 선택시 기본 설치되는 욕실팬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욕실 스마트 환기팬 옵션은 욕실1(공용욕실)과 욕실2(부부욕실)에 2개소에 설치되며,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스마트 환기팬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욕실 천정, 점검구, 욕실 등의 설치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마트 환기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욕실 스마트 환기팬의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마트 환기팬은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엔지니어드스톤 관련 유의 사항
 - 주방 기본마감재 상판은 MMA, 벽체는 타일로 시공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유상옵션 선택시 주방상판 및 벽체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되며 기본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이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선택 시 자재 특성상 이음매가 발생하며, 제조사, 색상, 패턴, 나누기는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재 특성상 조인트 부위가 발생합니다.
 - 59B타입 엔지니어드스톤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주방 아일랜드 연장부위가 사라지고 별도 아일랜드가 생기며, 냉장고장 위치가 변경됩니다. 관련사항은 안내문 및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거실 아트월 연장 관련 유의 사항
 - 거실 아트월 연장옵션은 거실 아트월(기본)과 동일한 타일로 연장 시공되는 옵션으로 해당 옵션 미 선택시 벽지로 시공됩니다.
 - 해당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 부위 및 면적이 상이하므로 옵션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9B타입 거실아트월 연장 옵션은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타일의 설치 나누기 및 배치는 본 시공과 견본주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자재 특성에 따라 실제 타일의 무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현관 중문 관련 유의 사항
 - 현관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로 설치됩니다.
 - 압력을 가하여 여닫기를 할 경우 도어댐퍼기능으로 인하여 중문 프레임과 도어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 가구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하부레일은 바닥(마루, 디딤석)과 단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비산방지필름이 유리에 부착됩니다.
 - 본 공사 시 제품의 상하부 레일, 손잡이 디테일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규격 및 형태, 제조사 등은 실 시공 시 동등 또는 동등사양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중 침실3 불박이장 관련 유의 사항
 - 침실3 불박이장 선택 시 배선기구의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3 불박이장 선택 시 가구로 가려지는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불박이장의 내부의 바닥 일부부위는 가구마감 없이 마루가 설치되므로 견본주택 내 설치된 불박이장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청약, 당첨,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입주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증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부적격 의심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 소득·자산보유기준 등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 등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사업주체가 부적격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접수장소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3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오염토,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에치급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아파트 786대, 근린생활시설 4대, 총 790대(장애인주차 28대 포함), 자전거보관소(160대),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키즈카페, 어린이놀이터 외
- ※ 주차대수, 확장형 주차비율, 장애인주차 위치, 하역공간 등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아래의 서류 제출 및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 주 방 |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
| | | | 거실 | 세대단말기(월패드)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 |
| 욕실 1개소 |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조절 세면기 | | 기타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 | | | 음성유도 신호기 | 시각장애인 |

• 신청시기 : 최초 공급계약 체결기간(2025.08.04. ~ 2025.08.07.)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서류

| | |
|-------------------|--|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
| |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 다음과 같은 설계 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일반사항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아파트의 명칭 등은 향후 사업주체간 협의 및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대지지분 감소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나, 잔금대출 등 개인사정으로 선납한 경우 별도 선납할인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10%유예가 적용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최대지반가속도(g) 0.216g 임.

■ 단지 내외부 여건

1) 일반공통

- 당 사업은 2023년 1월 최초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득, 2024년 12월 사업계획변경승인 1차, 2025 5월 사업계획변경승인 2차를 득 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건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https://dongnam-hanulche.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동, 206동, 207동 하부 및 201동 측면에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조경공간은 입주민이 접근하여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입주민이 임의로 해당 공간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안전사고, 식재하자, 오염 등)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6동과 207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기계/전기 관련 설비(배기팬, 탈취기, 실외기 등)가 206동 전면 외부공간에 설치 될 예정이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1동, 205동, 206동, 207동에 인접하여 단지 주출입구,부출입구,주차램프가 계획되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202동(1호,4호), 203동(4호)저층부 세대에는 주동과 인접하여 설치되는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보관소와 동일명칭)로 인하여, 세대별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냄새, 악취발생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각종 하부에는 부대복리시설, 외부조경, 조명 및 D/A 설비시설 등이 계획되어 이로 인한 눈부심 및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조명·태양광 발전설비·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 및 지붕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에 활용된 각종 인쇄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입체도,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VR동영상, 면적 및 도면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계획, 조망권, 일조, 시야간섭,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 생활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외관디자인, 색채, 마감재, 형태, 공용부 창호 형태 및 크기 등) 및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색채, 마감재, 디자인, 창호 형태 및 크기 등)은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디자인, 마감사양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 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성)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홀,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분양 전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 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이후 단지 명칭(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경관 및 색채 계획(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주 등의 외관디자인, 색채, 마감재, 형태, 창호 형태 및 크기, 태양광 발전패널, 난간 색상 및 재질, 외부 로고사인의 형태/위치/내용, 기타 시설물 위치, 식재 및 포장계획, 조경 옥외조명, 옹벽 등)은 인허가협의 및 시공시 현장여건, 구조안전 및 디자인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석재뿔칠, 도장으로 마감되며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이는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 입면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의 돌출장식 등으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이 동일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동호수의 위치, 입면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의 동출입구, 필로티 및 기타 시설물의 규모, 디자인, 마감재 등은 동별 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단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외관디자인, 마감사양, 색채 등),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주차출입구,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경관조명 등의 디자인, 마감사양, 위치, 형태, 재질
-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소방차전용 주차구역,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상수도 소화전, 연결송수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 바닥포장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시설물과 외부공간의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경관조명,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영구배수시스템, 동파방지열선시스템 수목관리, 전기차충전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 휴대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 및 유지비용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 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의 면적 및 위치가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59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타입은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위성안테나, TV 공청 안테나, 이동 통신 중계기(옥외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항공 장애등, 인명 구조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빗공해, 조망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각 설비별 설치 위치는 사업승인도서를 확인 바라며, 본 시공 시 장비들의 간섭, 전파간섭 등에 의해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도로 등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결정,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경우에 따라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외부 입면 장식물, 바닥마감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하며 보행로내 차량의 이동, 주정차, 이삿짐차량의 정차등으로 인한 식재, 조경시설물, 조경포장 파손시에는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욕실스피커폰,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는 호실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외관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담장 또는 헬스, 식생활타리 등은 설치되지 않으나 인허가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용 공기안전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15인승이며, 속도는 최대 105m/min 으로 적용되며 에어컨 설비가 없습니다.
- 정보통신등급은 사업승인최초 접수 기준으로 1등급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장 구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키즈카페 등) 평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부 부대시설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 업무를 위한 A/S센터(하늘채테라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205동, 207동의 입면에는 건축물 디자인을 위한 돌출 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하여 조망권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세대 내부

- 견본주택에 설치된 CG,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상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용 조명,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드레스룸, 침실 붙박이장, 선반가구,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 건립 타입(59A) 외 견본주택 미건립(59B, 59C) 타입의 마감 색상 및 디자인은 건립 타입과 유사하나 세부치수 및 형태 등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타입인 59B, 59C는 건립타입 59A와 마감색상 및 디자인이 유사함 단, 단위세대 건립형과 미건립형 공간의 크기 및 형태, 가구 레이아웃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타입인 59B는 주방창호가 없고 침실1(안방)에 파우더가구가 배치된 타입이며, 주방상판 또는 냉장고 옵션 선택 시 주방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타입이므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택형 타입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선택형 타입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니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손잡이 높이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프레임 및 유리)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달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잠금장치사양,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 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중문(프레임 및 유리) 옵션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나 타입별 규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 규격 및 형태, 제조사 등은 실 시공 시 동등 또는 동등사양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A, 59C 타입의 다용도실 창호의 위치는 사용성 개선을 위해 일부(벽면으로 부터100mm이격)변경될 예정이며, 분양이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변경될 예정입니다.
- 59A, 59C 타입의 다용도실 창호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침실1, 주방 창호의 전면에는 철재난간대가 설치되며, 철재난간대로 인한 조망권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싱크볼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규격 및 형태 기준으로 설치되나 세부 규격 및 형태, 제조사 등은 실 시공 시 동등 또는 동등사양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상부장은 쿡탑옵션(가스쿡탑 또는 전기쿡탑) 선택에 따라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별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의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바닥배수구의 위치, 설치 유무, 설치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부욕실 바닥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샤워부스의 설치 위치 및 규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상부는 외기에 접한 공간으로 난방효율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파우더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선반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파우더장,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단위세대 내(현관창고, 복도팬트리, 침실1 드레스룸 등)에 설치된 시스템 선반 가구는 본공사 시 모듈치수, 디테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반의 최대하중은 15kg(선반 1개당)이며, 시스템 선반의 특성상 한곳에 기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한쪽면에만 집중적으로 무게를 가할 시 위험하오니 기준 하중을 지켜 수납하시길 바라며, 개인의 사용미숙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강한 충격을 가할 시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선반/서랍 위에 사람이 올라가거나 기대면 위험하오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이로 인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제공되는 선반 및 악세서리는 소비자가 직접 이동이 가능한 제품으로 조작 시 포스트 피어싱에 정확하게 결합하여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용미숙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 커튼박스의 길이는 천장배관 등 본 시공사의 공사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견본주택 피난을 위한 동선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일부 마감자재(시트, 타일,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렵고,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으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단위세대에 시공된 타일의 무늬는 자재생산에 따라 무늬가 바뀔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수납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과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됩니다.(단, 각동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 사다리 설치 제외)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미설치되었고 하향식 피난 사다리로 대체되며, 화재시 하부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실외기실에는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각종 환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배수, 우수 입상배관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욕실 일부분만 바닥난방이 설치되며, 욕조 하부 및 샤워부스 내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됩니다.
- 다용도실,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렌지후드 배기는 당해층 배기가 적용되며, 렌지후드는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렌지후드 배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개수대 하부장 내부는 온수분배기 및 주방 배수배관 등이 설치되어 가림판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은 실외기실, 발코니1, 다용도실 높은 단차부위(세탁기 설치부위), 욕조하부, 주방가구, 신발장, 샤워부스 및 도기하부는 제외되며,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중 또는 구매 희망하는 가구(식탁, 침대 등) 및 가전기기는 사이즈, 형태 등에 따라 배치 불가 또는 복도면 노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발코니2) 가스계량기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위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발코니2)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천장고로 인하여 높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사전에 높이 확인 후 설치 필요합니다.
- 다용도실(발코니2)이 협소하여 손빨래 겸용수전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손빨래겸용수전 사용자 사용 편의를 위한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 주방후드 상부의 침니의 케이싱 사이즈는 성능 만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수구나 우수, 배수 입상의 위치 등은 사용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수구 미사용시(배수구에 약취 방지를 위한 봉수 파괴시) 배수관 내부의 약취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에 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배수구에 물을 흘려 봉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다용도실(발코니2)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며(높은 단차부위는 제외) 단열성능이 없는 플라스틱도어 또는 동등사양의 도어로 시공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천장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욕실, 발코니 등은 상이 합니다.
- 단위세대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따라 단지 내외부 인접건물에 따라 채광일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주동코아 벽면에 근접하여 인접벽면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
-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용 인터넷 회선이 필요하며(전용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단지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홈IoT 서비스(스마트 하늘채 lok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검사(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입주자의 부담입니다.(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음성인식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 구매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상기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홈IoT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어 서비스의 경우 연동 가능한 제조사 및 가전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욕실 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각 세대에 주방TV폰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성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각 침실에 적용되는 스위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및 난방온도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설치되며, 각 기능별 분리하여 개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최하 2개층 세대, 최상층 세대의 방범을 위하여 거실 및 발코니 내부에 동체감지기를 설치하며, 기타 층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선택옵션에 따라 전기설비 마감재(조명, 스위치, 콘센트 등)의 수량 및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차함은 침실2 출입문 뒤편, 월패드는 거실쪽에 설치되며, 세대 분전반, 통신단차함 및 월패드의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조명 일체형인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될 경우 발코니 조명이 설치되지 않으며, 빨래건조대의 조명은 일괄소등 동작시에 소등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생활정보기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용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가스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오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위해 세대에서 상부세대의 배관을 점검 및 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수전 위치 및 높이는 성능 향상 및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세대 환기를 위해 설치된 장비로 동절기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장비 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가동하여 환기시켜야 하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필터 교환이 필요하며, 필터 교체 시 필터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열교환기, 에어컨, 욕실팬(욕실 스마트 환기팬 포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 벽체 내부에 오픈수전함(급수, 급탕용)이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해 하부세대에서 오배수 배관을 점검 및 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설치를 위한 벽체매립 냉매배관 박스가 거실과 침실1(안방) 벽면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거실 아트월 벽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EV출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건물 외벽에는 각종 설비(환기, 난방, 가스 등)를 위한 배관, 덕트, 환기캡등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고, 소음, 진동,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람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공용부 / 단지 내 환경

- 단지 내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정압기 및 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상호형태 디자인, 마감재, 색채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사이즈는 동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6동 인근에 공용부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는 각 동 피트 내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국기계양대는 거실창호 철재난간대에 1개소 씩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외부공간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설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채광 창호는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보행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배기팬 등의 시설이 해당 시설의 상부공간 등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소방엔진펌프 가동 시 배기가스, 소음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탈취기, 배기팬 등의 상세 설치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수목, 관목 식재, 시설물, 조형물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 및 수종, 형태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입면색채, 디자인, 마감재,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상),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조 안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에는 수경시설(생태연못)이 설치되며, 이는 물놀이 또는 활동공간이 아니므로 입주자의 관리부재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이의 가동에 따른 소음, 물방울 비산, 관리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여하에 따라 녹조, 벌레,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 공용텃밭이 설치될 경우, 시공사는 텃밭시설만 조성하며 해당 텃밭은 입주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조성되는 면적과 수량이 한정되어 이는 시행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칭)주관으로 배분 및 운영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보관소와 동일명칭)은 각 동 주변에 설치(설치 위치는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재활용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환기구(D.A),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헬륨, 실외기, 환기구(D.A)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 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외부 놀이시설물,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수경시설 및 각종 조경시설물의 경우 안내사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와 사용,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 시설의 임의적 개조 등 입주자의 사용상 개인부주의 및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동 주변 및 필로티 내부에 설치되며,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필로티 내부 면적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일반 거치대형, 2단 거치대형, 레일 거치대형, 경사 거치대형 등으로 계약자 동의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황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냄새, 악취발생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양한 평면 타입이 혼합된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개발,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법면 또는 사면,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환기구(D.A),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보행로 및 어린이집,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문주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보행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지상주차장 주차램프, 문주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자연용 그릴창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등의 지붕층 일부 구간에는 인조잔디가 시공될 예정이며, 실제 시공시 분양CG, 단지모형과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포장의 재료, 패턴, 패턴의 크기, 색상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주차관련시설의 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 특성상 205동, 206동 공용부 주동 코어에서는 지하3층 주차장으로는 진입할 수 없으며,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의 공용부 주동코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계획 특성상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7동 공용부 주동 코어에서는 지하1층 주차장으로는 진입할 수 없으며, 지하2층, 지하3층 주차장의 공용부 주동코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방동보온과 제한적으로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해당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문주,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조경시설물, 쓰레기보관소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저층부의 마감 및 패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동출입구, 옥탑 및 지붕구조물,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색채 및 마감사양 등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문주의 경우 인접세대의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문주 등 외부시설물, 옥탑 및 지붕구조물 및 디자인을 위한 각종 조형물 등의 골조는 철근콘크리트조(PC조 포함), 철골조 등 요구되는 안전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 방식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 비상차량동선, 소방차 전용구획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 ,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및 조경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현황과 단지내부의 레벨차이 변경으로 인하여 단지 외곽 일부에 자연석 쌓기 등이 설치될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설계도서 및 분양자료상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여건에 의해 추가 설치 및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웬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 및 현장상황에 따라 추가설치될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단지 내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의 추후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외부 공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 포함)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현장 시공 시 카달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 포장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수목 유지관리 활동은 입주자 관리사항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하자발생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또는 주변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소방엔진펌프 가동 시 배기가스, 소음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또는 주변에 상업시설 주방환기를 위한 배기덕트와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냄새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7동 하부에 키즈 스테이션이 조성되어 실외기가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하부 부대시설(경로당,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관리사무소등)을 위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발생 및 조망권이 간섭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체 구조물에 의해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진출입구 1개소로 아파트와 공유하여야 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은 인허가 과정 및 시공시 현장여건,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설치 및 위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하층에 제연환풍 및 주차장 급배기용 환풍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최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로 연돌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여단음에 어려움과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연돌현상 방지를 위해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홀 공간에 추가시설(방풍구획, 도어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통행의 불편, 계약면적에 증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발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보행로, 공용홀 등에 CCTV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 등에 따라 설치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동 남서측 부위에 발전기 급배기용 D.A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발전기 가동 시 배기가스, 소음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201동, 202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201동 좌우측면 및 전면에 D.A그릴이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동 좌측 및 전면에 D.A그릴이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3동 주동하부 및 우측, 필로티후면에 D.A그릴이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4동,205동,206동 주동 좌우측에 D.A그릴이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7동 좌측 및 근린생활시설 DA그릴이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덕트,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덕트,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측면에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하차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급속 1대, 완속 38대, 과금형콘센트 17대가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주차장에 분산 및 집중 배치될수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방동보온과 제한적으로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계절창고는 지하2층, 지하3층에 각동별 2개소씩 설치되며, 계절창고에는 별도의 가구가 설치되지 않고 공간으로만 시공되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각 동별로 세대수의 15%이내의 칸수가 적용되어 각 동 지하층에 설치되고 출입구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용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201동, 203동, 206동, 207동 옥상 및 지하2층 환풍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시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207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면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레벨차이 조정상황 발생시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세대수, 세대 면적 및 층수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 속도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과정에서 디자인 및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경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나,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단지 경계면 일부에는 외부와 진입을 차단하는 외부와의 경계울타리가 인허가 및 현황에 따라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구간, 규격, 디자인은 입주자 동의없이 시공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진입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테라조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됨.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용역원휴게실,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키즈카페 등)지하주차장이며, 기타시설로 계절창고, 외부휴게공간, 조경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키즈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주변으로 완충녹지가 일부 설치되나, 단지 여건상 주변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울타리 등 외부여건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 예정이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고정형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락커 등)는 설치되나 이동식 가구(책상, 의자, 테이블, 소파, 인테리어 비품 등)와 스크린골프장은 제외됩니다. 또한 붙박이형 가구의 형태는 카달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및 변경도서와 상이할 경우 카달로그를 우선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요구조부(보, 기둥, 슬래브, 벽체 등)는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구간 또는 전체구간에서 구조공법이 변경될 수 있고,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재료의 강도, 철근배근, 부재의 크기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평면 계획 및 창호 등의 위치 등은 입주자의 편의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공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증감)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로는 6미터 이상(일부구간 제외), 높이는 2.3미터 이상이며 주차구획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입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주차대수 (세대당) | 구분 | 아파트 | | | | | | 근린생활시설 | | |
|--------------|-------|-------|------|-----|-----|-----|-----|--------|-----|-----|
| | | 지하주차장 | | | | | | 지상주차장 | | |
| | | 일반형 | 확장형 | 배려형 | 경형 | 장애인 | 전기차 | 일반 | 장애인 | 전기차 |
| 790대 (1.21대) | 계 | 337대 | 281대 | 15대 | 69대 | 28대 | 56대 | 3대 | 1대 | - |
| | 지하 1층 | 52대 | 9대 | 8대 | 11대 | 4대 | - | - | - | - |
| | 지하 2층 | 170대 | 138대 | 7대 | 38대 | 24대 | 20대 | - | - | - |
| | 지하 3층 | 115대 | 134대 | - | 20대 | - | 36대 | - | - | - |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56대 중 1대는 급속충전기, 38대는 완속충전기, 17대는 콘센트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 본 단지에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층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아파트 786대, 근린생활시설 4대, 총 790대(장애인주차 28대 포함))설치예정입니다.
- 주차장 입구 레벨은 우수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도로보다 약간 높으며, 차량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는 단지주출입구 2.7m 미만, 단지 부출입구 2.7m 미만이며, 지하1층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 주차구획 2.1m, 지하2층 차로의 유효높이는 2.7m, 주차구획 2.1m, 지하3층 차로의 유효높이는 2.3m 주차구획 2.1m미만임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자를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본 아파트 복리시설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29조의 4, 보건복지부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5)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과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지상1층에 설치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통행도로 일부를 공유하며, 주출입구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는 지상1층에 총4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중 1대는 조업주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부 호실별 출입구 부분에는 단지 계획상 레벨차이가 발생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후면부에는 레벨차로 인한 부출입구가 별도 설치 되지 않으며, 전면부 출입구를 이용하여 진입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는 전용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는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출입을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후면, 측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상업시설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및 주방환기를 위한 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동에 소음 및 진동, 냄새발생, 조망권 등의 간섭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인근동에 악취발생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천장고는 현황측량결과 및 설비, 전기배관 등의 간섭으로 인해 다소 변경(감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및 보안등 설치로 인해 점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천장고는 실별 상이하오니 계약전 해당 호실의 천장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설비는 소방관계법규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있습니다. 특정시설 입점 시는 입점자가 별도의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공사 시 스프링클러 위치 등이 변경 될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입점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입점 후 변경시도 동일)
- 상가별 전원공급, 소방 등 전기, 통신, 에어컨 배관, 소방 시스템 설비가 건축 구조상 각 점포 상부 천장을 관통하여 설치되며 건물의 유지 보수 시 다른 매장 내부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원격검침 시스템이 없으며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용판넬이 수분양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가별 전기용량은 삼상(380V~220V) 5kW 기본 적용되고, 대용량 전원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조명기구에는 LED 조명으로 시공되며, 등기구 교체 공사를 할 경우 입점자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화, 인터넷 및 유선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시공되어 있으며, 사용을 위한 신청은 수분양자가 직접 기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전기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시스템 에어컨공사 및 주방 환기는 입점사 공사분 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가스계량기는 입점사 공사분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가스계량기는 입점사 공사분이며,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신청은 입점자께서 도시가스공급사(충청에너지서비스(주))에 신청해야하고, 관련 분담금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가스배관은 공용 복도 및 공용 공간이 없을 경우 매장 외부로 노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점포)별 간판의 부착위치는 '청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 및 건축주가 기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해당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6) 단지 외부 여건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관리권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청 계획에 따라 결정,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변 기반시설 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인허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

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바깥 도시계획도로, 시설 및 녹지, 가로녹지, 공원시설은 아파트건설 시공자의 시공구역에서 제외되니 관련 민원을 시공사로 할 수 없으며, 단지 주변여건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건물에 의하여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단지 부출입구 주변에는 인접대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지 부출입구 진입 시 차량의 간섭 및 보행자 동선의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 북서측에는 교회 및 교회부속건물등이 입지해 있으니 사전에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확인바라며, 이로인해 소음 및 조망의 간섭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북서측에는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부속건물등이 입지해 있으니 사전에 사업부지를 방문하여 확인바라며, 이로인해 소음 및 냄새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서측에는 동남지구우미린폴하우스 아파트가 준공되어 있으며 최고층수 25층 규모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배치,형태 등으로 일조 및 소음, 조망의 간섭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교육 관련 유의사항**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 운동초등학교
 - 중 학 생 : 청주시 제1중학교군 내 분산배치
 - 고등학교 : 청주시 및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 지원 분산 배치
- 당해지구 내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변경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마감사양,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와 시공시 현장상황, 디자인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및 배수 입상관,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채광용 천창,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정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층고, 근린생활시설 층고,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소음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650세대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까지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650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제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 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 청주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70%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자,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기타사항

- 자연지반 표면은 토양이나 투수성포장재로 되어있는 포장지역이 있으므로 이사짐 등 차량진입시 침하우려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침하는 입주인이 보수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22호, 2021. 11. 8.)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을 예정이나 준공 입주후 사용상의 부주의에 대한 하자 및 정기검사는 입주인이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입주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통행을 방해할수 없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태풍 등 바람에 의해 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에 설치한 지주목을 임의로 해체할경우 전도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을 확인 바랍니다.
- 206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됨을 CG, 모형에 표기하였으니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59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타입)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품품목, 가구 디자인 및 유상옵션 항목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CG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도로 및 기타외장재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미선택시 평면형태, 제품품목, 조명기기의 위치, 시스템선반 설치유무 및 길이, 주방가구의 형태 또는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무상옵션 선택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타입)별로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질,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제조사 사양, 색상, 유리, 하드웨어,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변경)시행인가 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함)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출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시스템에어컨, 욕실환기팬, 환기디퓨저)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전열교환기, 환기컨트롤러는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네트워크스위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색상,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타입별 형태, 가구배치 및 상세, 실면적, 비확장, 확장라인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과 상이한 점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주택형(타입)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VR 영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배치, 식재, 시설물,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공사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시행인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 시 주택형(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미건립 타입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약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약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 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견본주택 오픈 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 내부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예 의해 당첨된 주택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제1의 3호에 의하여 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거래 신고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계약 후 입주 할 수 없으며, ② 입주가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 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계약이 해지 될 수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의무사항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 (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 방습층 설치 (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 해당없음 | 지역난방지구 |
| | 고효율 전동기 (라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 | 고효율 급수펌프 (마목) |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비 (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라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인증번호: 2025-03-19-001-001</p> <p>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인증번호: 2025-03-19-001-002</p> <p>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인증번호: 2025-03-19-001-003</p> <p>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각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 여건 및 본인증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비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 구 분 | | | 총 액 | | | |
|-----|-----|-----------|-------------------|-------------------|-----------|------------------|
| 택지비 | | | 택지공급가격 | 48,796,894 | | |
| | | | 기간이자 | 1,471,499 | | |
| | | | 필요적 경비 | 67,542 | | |
| | | | 그 밖의 비용 | 5,930,588 | | |
| | | | 계 | 56,266,523 | | |
| 건축비 | 공사비 | 토목 | 토공사 | 3,952,900 | | |
| | | | 흙막이공사 | 2,614,607 | | |
| | | | 비탈면보호공사 | - | | |
| | | | 옹벽공사 | - | | |
| | | | 석축공사 | - | | |
| | | | 우수·오수공사 | 525,479 | | |
| | | | 공동구공사 | - | | |
| |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12,378 | | |
| | | | 도로포장공사 | 672,093 | | |
| | | |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 | | |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 |
| | | | 조경공사 | 2,801 | | |
| | | | 부대시설공사 | - | | |
| | | | | | 계 | 7,780,258 |
| | | | | | 공통가설공사 | 1,684,694 |
| | | | | | 가시설물공사 | 4,155,904 |
| | | | | | 지정 및 기초공사 | 1,833,200 |
| | | | 철골공사 | 172,908 | | |
| | | | 철근콘크리트 공사 | 32,483,467 | | |
| | | | 용접공사 | - | | |
| | | | 조적공사 | 2,273,897 | | |
| | | | 미장공사 | 2,729,225 | | |
| | | | 단열공사 | 2,396,200 | | |
| | | | 방수·방습공사 | 2,664,642 | | |
| | | | 목공사 | 1,118,197 | | |
| | | | 가구공사 | 6,513,551 | | |
| | | | 금속공사 | 2,413,987 | | |
| | | | 지붕 및 흡통공사 | 90,614 | | |
| | | | 창호공사 | 8,231,627 | | |
| | | | 유리공사 | 1,563,649 | | |
| | | | 타일공사 | 3,434,114 | | |
| | | | 돌공사 | 3,293,575 | | |
| | | | 도장공사 | 3,805,311 | | |
| | | | 도배공사 | 1,245,788 | | |
| | | | 수장공사 | 4,716,227 | | |
| | | 주방용가구공사 | - | | | |
| | | 그 밖의 건축공사 | 752,896 | | | |
| | | 계 | 87,573,673 | | | |
| | | 기계설비 | 급수설비공사 | 1,198,125 | | |
| | | | 급탕설비공사 | 1,797,188 | | |
| | | | 오·배수설비공사 | 2,624,754 | | |
| | | | 위생기구설비공사 | 1,563,890 | | |
| | | | 난방설비공사 | 4,021,274 | | |
| | | | 가스설비공사 | 456,465 | | |
| | | | 자동제어설비공사 | 1,192,855 | | |
| | | | 특수설비공사 | 1,275,954 | | |
| | | | 공조설비공사 | 6,739,732 | | |
| | | 계 | 20,870,237 | | | |
| | | 그 밖에 공중 | 전기설비공사 | 12,284,564 | | |
| | | | 정보통신공사 | 2,637,595 | | |
| | | | 소방설비공사 | 2,605,763 | | |
| | | | 승강기공사 | 872,496 | | |
| | | 계 | 18,400,418 | | | |
| | | 그 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5,279,377 | | |
| | | | 이윤 | - | | |
| | | | 계 | 5,279,377 | | |
| | | 간접비 | 설계비 | 1,636,123 | | |
| | | | 감리비 | - | | |
| | | | 일반분양시설경비 | 1,399,516 | | |
| | | | 분담금 및 부담금 | - | | |
| | | | 보상비 | - | | |

| | | |
|---------|-----------------------------|-------------|
|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 1,350,847 |
| | 계 | 4,386,486 |
| 그 밖의 비용 |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 12,531,629 |
| | 합계 | 213,088,600 |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단위 : m², 천원]

|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 가. (주)통일감정평가법인 | 나. (주)경일감정평가법인 |
|---------------|----------------|----------------|
| 53,684,482 | 53,527,050 | 53,841,915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건축감리 | 소방 감리 | 통신 감리 | 전기감리 |
|----|--|------------|--|----------------|
| 상호 |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경동엔지니어링 (주)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유탐엔지니어링 | (주)유탐엔지니어링 |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경동엔지니어링 (주)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 (주)유탐엔지니어링 | (주)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
| 금액 | 9,544,388,000 | | | 700,388,400 |

※ 감리회사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택지비 가산비 | | | | | 건축비 가산비 | | | | | | | | | | |
|-------------|------------------------|-------------|----------|-----------|----------------------|------------------|-------------|------------|--------------------|--------------------------|--------------------------|----------|-------------------|-------------|------------|
| 택지비 기간이자 |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 말뚝박기 공사비 | 기타 비용 | 소계 | 법정초과복 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 추가비용 | | | 친환경 주택건설 가산비 | 지하 주차장 증고증가 공사비 | 법령·조례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 | 사업승인 조건 충족 가산비 | | 소계 |
| | | | | | | 홈 네트워크 설치비 | 에어컨 냉매배관 | 기계 환기설비 | | |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 기타 비용 | 법정초과 조경 설치비 | 저층부 마감특화 | |
| 1,471,499 | 2,513,147 | 3,417,441 | 67,542 | 7,469,629 | 2,334,942 | 3,543,582 | 787,540 | 1,376,087 | 1,684,129 | 292,782 | 199,876 | 410,136 | 442,177 | 1,460,378 | 12,531,629 |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
| 한국토지주택공사 (301-82-17619) 코오롱글로벌(주) (120-81-50012) 이수건설(주) (206-81-40254) | 코오롱글로벌(주) (120-81-50012) 이수건설(주)(206-81-40254)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301-81-19298) (주)경동엔지니어링(312-81-11675) (주)다인씨엠건축사사무소(132-81-12608) (주)유탐엔지니어링(409-81-14831) |

■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

견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

- 위치안내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166번지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해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17:00
- 분양문의 : 1800-4011
- 공식 홈페이지 : <https://dongnam-hanulche.com/>